

부산지방법원 2021. 1. 28 선고 2020가단3151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규동

변론 종결 2020. 11. 5.

판결 선고 2021. 1. 2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9. 10. 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. 10. 11. 접수 제512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조합는 2012. 3. 21. 주식회사 F(이하 'F'이라 한다)에 35,000,000원을 대출하였고, D는 F의 위 대출금채무를 42,500,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였다.

나. E조합는 2014년경 F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F 및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29076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.

6. 16. 위 법원으로부터 'F 및 D는 E조합에게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9. 21.부터 2012. 11. 4.까지는 연 13.5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4. 7. 7.까지는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4. 7. 22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E조합는 2016. 5. 18. G단체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 G단체는 2019. 10. 30.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그 채권양도통지는 2020. 3. 26. D에게 도달하였다.

라. D는 2019. 7. 28. 그 모친인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5 지분을 상속받았는데,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4. 그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9. 10. 11.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.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마. 한편, D는 위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, 2020. 5. 8.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58,756,699원(= 원금 20,699,272원 + 미수이자 35,965,650원 + 연체이자 1,949,537원 + 가지급금 142,240원)이다.

[인정근거]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, 10, 11, 12호증(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

포함한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4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D와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는 각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남편인 D를 포함한 I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시어머니인 I을 모시고 살면서 치매 간병까지 한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각 증여하게 된 것이고,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갑 제6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D와 혼인한 뒤 1995. 11. 4.경부터 시어머니인 I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, I은 2019. 5. 27.부터 2019. 7. 28.까지 치매와 대퇴부전자간폐쇄성골절 등으로 의료법인 J에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9. 7. 28. 사망한 사실, I의 자녀이던 D, K, L, M, N는 2019. 10. 11. I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/5 지분씩 상속등기를 마쳤는데, 그 중 D, K, L, M이 같은 날 피고에게 자신들의 해당 상속 지분을 각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, 갑 제8,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D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, E조합는 2013. 11. 11. D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는데, 피고가 2013. 11. 12. 위 최고장을 수령한 점, 피고 D는 2016. 2. 1. E조합에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감면요청서를 제출하여 2016. 7. 5.부터 2018. 3. 22.까지 합계 9,000,000원을 분할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건

부동산의 표시

1. 부산광역시 연제구
대 166 ㎡

2. 부산광역시 연제구
[도로명주소]
부산광역시 연제구
조표
세멘트돌조 슬래브지붕
단층
주택
79.67 ㎡

